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996. 2. 27.

교육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2월 14일

○ 회부일자 : 1996년 2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122회 충청북도의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96. 2. 27)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가. 제안이유

95. 1. 1부터 청주시에 구가 설치되어 관할구역이 정해짐에 따라 공동실습소 설치학교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충청북도는 '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청주농업고등학교 위치란중 "청주시"를 "청주시 상당구"로 하고, 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청주기계공업 고등학교 위치란중 "청주시"를 "청주시 상당구"로, 충북공업고등학교 위치란 중 "청주시"를 청주시 흥덕구"로 변경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충청북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증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청주시 구설치에 관한 조례 (청주시 조례 제1,795호, 1994. 12. 30)가 제정되었고
'95. 1. 1부터 청주시에 구가 설치되어 관할구역이 정해짐에 따라 공동실습소
설치학교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티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조례안 : 별첨

9.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